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1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02,322,230	30,069,667
일반회계	773,382,787	23,201,484
특별회계	228,939,443	6,868,183
공기업특별회계	62,813,023	1,884,39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984,400	1,049,53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7,828,623	834,859
기타특별회계	166,126,420	4,983,793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36,657,185	1,099,716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336,324	130,090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356,193	40,686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053	92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109,189,010	3,275,670
주택사업특별회계	2,358,826	70,76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173,119	35,194
기반시설특별회계	1,176,761	35,303
경영사업특별회계	961,757	28,853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1,535,029	46,051
주차장특별회계	7,379,163	221,37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540,12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2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0,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